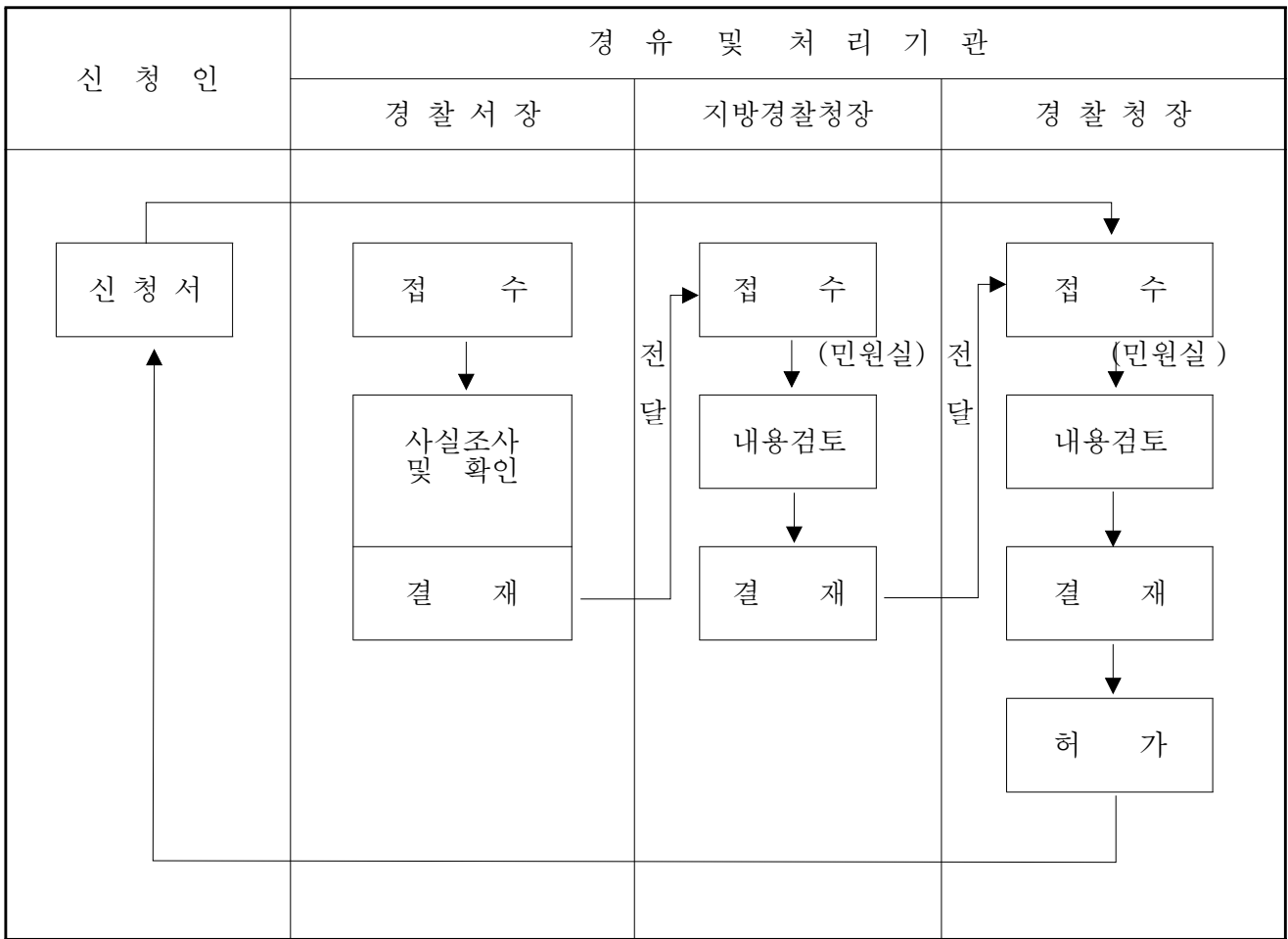


사행기구판매업 신규(조건부) 허가신청서		처리기간	
		15일	
신청인	①성명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소		
④소재지		⑤전화번호	
⑥영업의종류		⑦영업소명(상호)	
⑧제조 또는 판매품목			
⑨영업설비의 개요			
⑩시설완료 예정일			
<p>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2항(제4항)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(제18조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규(조건부)허가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찰청장 귀하</p>			
구비서류 1. 시설명세서 1부		수수료	
		뒷면참조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뒷면)



수 수 료(영 제14조 관련)

구 분	영업의 허가	변경허가	승계신고
복표발행업 및 현상업	10만원	5만원	5만원
기타사행행위업	5만원	2만5천원	2만5천원
사행기구제조업	10만원	5만원	5만원
사행기구판매업	5만원	2만5천원	2만5천원